##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정청래·정진욱·이성윤

김용민 • 박균택 • 임오경

김승원 · 서삼석 · 이건태

박지원 · 서영교 · 장경태

모경종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「국회법」상 증인을 의결·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거나, 입 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
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.

이에 입법,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 중 "국정조사를"을 "국정조사, 청문회 등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증인에 대한 동행명령) ①	제6조(증인에 대한 동행명령) ①
국정감사나 <u>국정조사를</u> 위한	<u>국정조사, 청문</u>
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	회 등을
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	
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	
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	
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	
령할 수 있다.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